

문화재 영향진단법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32
------------	-------

발의연월일 : 2022. 12. 20.
발의자 : 김승수 · 지성호 · 김희국
金炳旭 · 이채익 · 김영선
한무경 · 이 용 · 권성동
박 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문화재 인근 지역에 각종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들이 증가하거나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개발구상 발표, 문화재 보존과 개발간 갈등이 빈번하며 건설공사 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갈등문제로 문화유산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로 인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음. 특히, 문화재 지표조사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이원화된 규제로 국민 불편 가중, 문화재를 개발과 국민생활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및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문화재 영향 협의를 통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지

역에 문화재의 매장·분포 여부와 해당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영향검토를 동시에 실시,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재영향진단’이란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 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영향진단등의 객관성,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진단지침, 점검목록 및 진단보고서 작성 기준 등을 작성·보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재청장과 사전문화재 영향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개발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개발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계획의 규모·내용·시기 등을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역사문화환경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영향진단기관에 의뢰, 문화재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진단보고서를 작성,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호방안 및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진단보고서를 반려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

사. 문화재청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치사항을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이때 필요한 조치 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또는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봄(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통보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원

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16조).

자. 문화재가 매장·분포하지 않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약식문화재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함 (안 제17조).

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약식영향진단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때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안 제18조).

카.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기관에 약식 영향진단 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약식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타. 문화재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조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23조 및 제24조).

파. 법령 위반 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양벌규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

문화재 영향진단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을 말한다.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매장문화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형의 문화재를 말한다.
4.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건설공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사전문화재영향협의”란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7. “문화재영향진단”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8. “약식문화재영향진단”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9. “문화재영향진단등”이란 사전문화재영향협의, 문화재영향진단 및 약식문화재영향진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부터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이하 “역사문화환경등”이라 한다)을 보호·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거나 역사문화환경등을 훼손한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 ③ 국민은 역사문화환경등의 가치를 보호·보존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문화재영향진단등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역사문

화환경등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② 문화재영향진단등에 포함되는 보호·보존조치는 과학적 또는 학술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③ 문화재영향진단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영향진단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5조(문화재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영향진단등의 객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단지침, 점검목록 및 영향진단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문화재영향진단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전문화재영향협의

제7조(사전문화재영향협의 대상)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문화재청장과 사전문화재영향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획부지 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2. 계획부지 내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호 ·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 ·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계획
3. 교통시설의 건설계획
4. 하천이용 및 개발계획
5. 산지개발계획
6.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계획
7.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제8조(사전협의 절차 등) ①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를 요청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개발계획의 성격, 지역 및 규모

2. 계획부지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및 보호방안 필요성

여부

3. 계획부지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황 및 보존조치 필요성 여부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계획의 규모·내용·시기 등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2. 매장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3.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해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협의요청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문화재영향진단

제9조(문화재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문화재영향진단(이하 “영향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공사가 제3호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호·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영향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영향진단의 절차 등) ① 영향진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0조에 따른 문화재영향진단기관(이하“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②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영향진단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건설공사 지역 내 문화재 현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사결과

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나. 매장문화재가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2. 건설공사가 제1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

3. 제2호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을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

나. 건설공사 부지 내 매장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진단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영향진단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진단보고서 작성 및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진단보고서의 반려 및 보완)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진단보고서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2. 역사문화환경 보호방안 또는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역사문화환경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단보고서의 내용 또는 역사
문화환경등의 보호·보존을 위한 조치방안이 보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에게 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①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
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및 통보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치사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3조에 따라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허가등의 의제)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등 검토결과를 통보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이행사항 점검)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통보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 결과 통보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약식문화재영향진단

제17조(약식문화재영향진단의 대상 등) 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약식문화재영향진단(이하 “약식영향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그 실적을 매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결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약식영향진단의 대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약식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문화재영향진단기관

제20조(진단기관) 영향진단 및 약식영향진단(이하 “영향진단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관련 기관

4.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제21조(진단보고서 작성관련 준수사항) 진단기관과 영향진단등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진단보고서 작성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진단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자신이 대행하는 영향진단등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진단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역사문화환경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단보고서의 검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5. 진단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역사문화환경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단보고서의 검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영향진단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문화재청장은 영향진단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연구·조사) 문화재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향진단등에 필요한 진단기준 및 진단방법, 지표 등의 개발
2. 영향진단등의 기법의 개발
3. 영향진단등의 효과분석
4. 그 밖에 문화재영향진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재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양성
2. 진단기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문화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유지의 의무) 영향진단등 대상사업의 사업자, 진단기관, 진단 보고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였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영향진단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

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청문)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자
2.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21조제4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21조제5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단보고서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향진단등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자

2.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